

---

#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수시모집 특별전형 모집요강

---

2024. 05.

2025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의결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지원서류 제출	2024.07.01.(월) ~ 07.05.(금) 09:00 ~ 17:00	입학관리팀 (입학취업지원관1층)	지원자격 심사원,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별도 제출서류(11p 참고)
지원자격 심사	2024.08.05.(월) ~ 08.09.(금) 09:00 ~ 17:00	입학관리팀	
입학지원서 접수	2024.09.09.(월) ~ 09.13.(금) 09:00 ~ 17:00	입학관리팀	평일 본교 방문접수 (입학지원서)
면접고사	2024.10.26.(토)	입학관리팀	면접고사 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실기고사	2024.10.07.(월) ~ 10.16.(수)	입학관리팀	실기고사 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
합격자 발표	2024.11.12.(화) 14:00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www.cju.ac.kr
문서등록	2024.12.16.(월) ~ 12.18.(수) 09:00 ~ 16:00	지정 등록처	
최종 등록	2025.02.10.(월) ~ 02.12.(수) 09:00 ~ 16:00	지정 등록처	

※ 입학서류 및 입학지원서 제출시 유의 사항

- 「부모 및 지원자 모두가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은 위 일정에 적용받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모집요강"을 참고
-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 기간에 우리 대학교 입학관리팀을 방문하여 제출(토·일요일에는 접수 불가)
- 서류의 지연 도착,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의 불명, 연락처 오기재, 모집요강에서의 요구사항 미이행 등으로 발생하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책임임

## 2.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 2025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의결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재외국민 (입학정원2%)	전교육과정 이수자	복한 이탈주민
경상 대학	인문	경영학과	80	8이내	모집 단위별 약간명	모집 단위별 약간명
		회계학과	45	4이내		
		경제통상학과	42	4이내		
		무역학과	40	4이내		
		관광경영학과	60	6이내		
		호텔외식경영학과	35	3이내		
인문 사회 대학	인문	신문방송학과	55	5이내		
		광고홍보학과	90	9이내		
		법학과	32	3이내		
		경찰행정학과	45	4이내		
		지적학과	50	5이내		
		사회복지학과	55	5이내		
		문헌정보학과	45	4이내		
		영어영문학과	32	3이내		
공과 대학	자연	신소재화학과	30	3이내		
		에너지융합공학과	45	4이내		
		데이터사이언스학과	40	4이내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55	5이내		
		디지털보안학과	50	5이내		
		토목공학과	30	3이내		
		환경공학과	30	3이내		
		조경학과	43	4이내		
		건축학과	39	3이내		
		건축공학과	40	4이내		
		전자공학과	65	6이내		
		시스템반도체공학과	50	5이내		
전기제어공학과	45	4이내				
사범 대학	인문	국어교육과	38	-	-	-
	자연	수학교육과	38	-	-	-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재외국민 (입학정원2%)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예술 대학	예체능	시각디자인학과	50	5이내	모집 단위별 약간명	모집 단위별 약간명
		공예디자인학과	42	4이내		
		아트앤패션디자인학과	45	4이내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50	5이내		
		산업디자인학과	45	4이내		
		만화애니메이션학과	46	4이내		
		영화영상학과	60	6이내		
		연극학과	55	5이내		
		생활체육학과	45	-	-	-
보건 의료 과학 대학	자연	간호학과	147	-	-	-
		치위생학과	43	-	-	-
		방사선학과	33	-	-	-
		물리치료학과	41	-	-	-
		작업치료학과	40	-	-	-
		임상병리학과	42	-	-	-
	예체능	스포츠재활학과	51	5이내	약간명	약간명
	인문	의료경영학과	42	-	-	-
	자연	제약공학과	60	6이내	약간명	약간명
		바이오의약학과	40	4이내	약간명	약간명
동물보건복지학과		40	-	-	-	
직할 학부	자연	항공운항학과	30	-	-	-
		항공기계공학과	40	4이내	약간명	약간명
	인문	항공서비스학과	65	-	-	-
	자연	무인항공기학과	40	4이내	약간명	약간명
	인문	군사학과	40	-	-	-
자유전공 학부	인문	자유전공학부	45	-	-	-
<b>계</b>			<b>2,621</b>	<b>52명</b>	<b>제한없음</b>	<b>제한없음</b>

- ※ 전체 입학정원의 2%의 52명 선발하되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함
- ※ 단,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입학정원에 제한 없이 선발함
- ※ 「부모 및 지원자 모두가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은 입학정원에 제한없이 선발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모집요강을 참고

### 3. 지원자격

#### 가. 지원자격 요약

구분	자격요건	
재외국민 (정원외2%) 전형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내용
	국외 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 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전교육과정 이수자전형	국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외국의 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중 우리대학에서 요구하는 한국어능력시험 기준을 충족한 자	
북한이탈 주민전형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나. 지원자격 인정기준

##### 1) 기본사항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국의 관계 법령에 의거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유아원·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 과정은 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GED 등 초·중·고등학교과정 중의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원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전형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외국군 기지 포함) 재학기간은 국외학교 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함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학년 ~ 6학년 과정	Year 2 ~ Year 7 과정
중학교 과정	7학년 ~ 9학년 과정	Year 8 ~ Year 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학년 ~ 12학년 과정	Year 11 ~ Year 13 과정

- 학기제는 국내 학제에 준하여 1년 2학기제를 기준으로 하며, 3학기제 또는 4학기제는 2학기제로 환산하여 산정함

\*3학기제: 1, 2학기 정상이수 시 2학기제의 1학기로 인정, 2, 3학기 정상이수 시 2학기제의 2학기로 인정

\*4학기제: 1, 2학기 정상이수 시 2학기제의 1학기로 인정, 3, 4학기 정상이수 시 2학기제의 2학기로 인정

- 해당 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1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국내학교와 국외학교 간 재학학기가 1개 학기 이상 중복된 경우, 중복학기 중 1개 학기만 국외 학교 재학학기로 인정

## 2) 재외국민(입학정원2%)전형

구분	인정기준
국외 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 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 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재학 기간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li> <li>-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li> </ul>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li> </ul>
국외체류 일수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li> </ul>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li> </ul>
재학기간 산정기준	1. 부 또는 모의 근무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만 인정함 2.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기간만을 지원자격 산정 기간으로 인정함
체류기간 산정기준	1. 지원자격 산정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 배우자 및 학생이 함께 국외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2. 국외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의 출입국사실기록을 근거로 하여 연/월/일 단위로 산출하여 적용함(출국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 입국일은 제외) 3.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하여 반영함
재직기간 산정기준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학,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은 해당하지 않음

3) 전교육과정 이수자전형

-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 재학 학기가 있어도 국외에서 해당 학기를 중복이수한 경우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학년제가 동일한 국외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총 수학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기준(2개 중 1개 이상 충족)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기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예·체능 계열은 2급이상)
- TOEIC 650, TOEFL 530 (iBT 71), NEW TEPS 326점, IELTS 5.5 이상 소지자

4) 기타

- 국적 관련 자격 기준: 대한민국 복수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 졸업예정자는 2025년 2월 28일(금)까지 졸업해야 함. 단,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 위에서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교육부의 지침이 있을 경우 모집요강이 발표된 후에도 지원자격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자에게 개별 연락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사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본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4. 전형방법

##### 가. 평가요소 및 배점

구분	모집단위	선발 모형	사정 비율	전형요소(%)			
				면접	서류	실기	기타(세부명)
재외국민 (입학정원2%) 전형	전체 모집단위 *사범대학, 보건의료과학대학 (스포츠재활학과, 제약공학과, 바이오의약학과 제외), 생활체육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서비스학과, 군사학과, 자유전공학부 제외	일괄 합산	100	100	-	-	
전교육과정 이수자전형			100		100		예체능계열 제외
			100		100		시각디자인학과, 공예디자인학과, 아트앤패션디자인학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북한이탈 주민전형			100	100			영화영상학과, 연극학과

##### 나. 평가방법

- 1) 면접고사는 언어 구사 능력, 지원 전공 이해력, 학업 수학 능력, 수학 계획 등을 4개 평가 항목으로 대면 구술에 의해 평가함(단, 예체능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간단한 실기 테스트 병행할 수 있음)
- 2) 입학성적 총점의 60%(60점) 미만을 취득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3) 모집인원은 총 52명으로 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성적 총점 순에 의하여 선발함. 단, 전 모집단위 지원자가 전체 모집인원(52명)을 넘을 경우 각 모집단위별 입학성적 총점 순에 의해 해당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내에 있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학성적 총점 순으로 52명을 선발함
- 4) 모집정원에 제한 없는 정원외에 해당하는 지원자(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는 입학성적 총점이 60%(60점) 이상일 경우 전원 선발함
- 5)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 다. 면접 및 실기고사

#### 1) 고사 일자

고사구분	모집단위	일자	지참물
면접고사	전체 모집단위	2024.10.26.(토)	아래의 신분증 중 택1
실기고사	시각디자인학과	2024.10.07.(월)	
	산업디자인학과	2024.10.08.(화)	
	아트앤패션디자인학과	2024.10.10.(목)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2024.10.11.(금)	
	공예디자인학과	2024.10.14.(월)	
	만화애니메이션학과	2024.10.15.(화) ~ 10.16.(수)	

※ 신분증은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신분증 중에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만 인정

※ 개인별 고사실 및 고사 시간: 실기고사는 2024.09.27.(금), 면접고사는 2024.10.18.(금)에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 2) 면접고사 평가내용

평가영역	평가내용	반영비율(최고점/최저점)
대학교육 이념과의 적합성	건학정신 및 교육이념의 부합성 등	100% (100/20)
모집단위와의 적합성 (전공 적성 및 비전)	모집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인지 여부 등	
학업성 및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이해력, 분석력, 사고력, 창의력, 표현력 등	
인성과 가치관	인성(리더십, 책임감, 사회봉사성, 도덕성), 가치관, 학습동기 등	

※ 60점 미만 과락 불합격

#### 3) 실기고사

- 내용: 당일 제공하는 실기 과제에 따라 4절 썬트지를 이용하여 4시간 이내 실기고사 진행  
(단, 기초디자인의 경우 컬러 채색 원칙)

- 실기과제(원서접수시 택1)

모집단위	실기과제	문제은행	비고(준비물)
시각디자인학과	발상과표현	O	연필, 지우개, 칼, 붓, 파레트, 물통 외에 평면채색도구 (포스터물감, 수채화물감, 색연필, 콘테, 마카, 파스텔, 정착액 등) 단, 유화물감 제외 및 모노톤(단 일색상) 표현 불가
	기초디자인		
공예디자인학과	발상과표현		
	기초디자인		
아트앤패션디자인학과	발상과표현		
	기초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발상과표현		
	기초디자인		
산업디자인학과	상황표현		
	발상과표현		
	기초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상황표현	X	유화를 제외한 모든 채색 도구
	간만화		
	상황표현		

※ 문제은행은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4) 실기 및 면접고사 관련 유의 사항

- 신분증은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신분증 중에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만 인정
- 신분증은 수험기간 중 항상 휴대하여 실기 및 면접고사 시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신분증 미지참 시 고사 응시 불가)
- 실기 및 면접고사 당일은 휴대폰(스마트폰), 통신기기, 녹음기 및 카메라 등을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고사 종료 이후라도 고사 중 휴대폰(스마트폰), 통신기기, 녹음기 및 카메라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우리 대학교의 공지가 없는 한 면접고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되므로 모든 수험생은 고사시간에 늦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함

## 5. 제출서류

### 가. 재외국민(입학정원2%)전형

#### 1) 공통서류

제출서류	제출구분	비고
지원자격심사신청서	필수	· 국문 작성
입학지원서	필수	· 국문 작성 ·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초·중·고등학교 성적·재학증명서	필수	·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전입전출 일자·학년·학기)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교육부 인가 재외한국국제학교 또는 국내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필수	· 졸업(예정) 시점이 명기되어있어야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합격 후 최종 성적증명서와 졸업 증명서를 제출 ·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필수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국외 재학 학년의 학기 개시일/종료일을 알 수 있는 학사일정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 해당자에 한해 혼인관계, 입양사실 관련 서류 추가 제출 · 2024.06.0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출입국사실증명서	필수	· 지원자 본인, 부, 모 각 1부 · 2024.06.0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여권 사본	필수	· 지원자 본인, 부, 모 각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여권번호와 일치해야 함 · 복수국적이나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해당 여권 모두 제출
사실증명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필수	· 지원자 본인, 부, 모 각 1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필수	· 지원자 본인, 부, 모 각 1부 · 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 국외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로 대체 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 지원자 본인, 부, 모 각 1부

#### 2) 국외 재직형태별 추가 제출서류

재직구분	제출서류	제출구분	비고
국외파견 재직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필수	· 국외 근무기간 및 국가명 기재
	해외직접투자신고서(허가서) 또는 해외지사 설치인증서	해당자 필수	· 외국환 은행 발급 · 국외파견 재직자 중 상사 주재원에 한함
현지법인 취업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필수	· 국외 근무기간 및 국가명 기재 · 영사확인 필요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필수	· 영사확인 필요
	법인세 납부이력	필수	· 영사확인 필요
현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필수	· 영사확인 필요
	국외 세금납부 증명서	필수	· 영사확인 필요

**나. 전교육과정 이수자전형**

제출서류	제출구분	비고
지원자격심사신청서	필수	· 국문 작성
입학지원서	필수	· 국문 작성 ·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초·중·고등학교 성적·재학증명서	필수	·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전입전출 일자·학년·학기)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교육부 인가 재외한국국제학교 또는 국내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필수	· 졸업(예정) 시점이 명기되어있어야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합격 후 최종 성적증명서와 졸업 증명서를 제출 ·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필수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국외 재학 학년의 학기 개시일/종료일을 알 수 있는 학사일정표 제출
활동증빙서류 목록표(서류전형 대상자)	선택	· 원서접수 후 PDF 출력하여 활동증빙서류와 함께 1개의 파일로 제출
활동증빙서류(서류전형 대상자)	선택	· 최대 10개 항목, A4 20페이지 이내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서	필수	· 지원자 본인, 부, 모 각 1부 · 2024.06.0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신분증 사본	필수	· 여권
사실증명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재정보증서류	필수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증빙 서류	필수	

**다. 북한이탈주민전형**

제출서류	제출구분	비고
지원자격심사신청서	필수	· 국문 작성
입학지원서	필수	· 국문 작성 ·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필수	· 통일부 및 시·군·구청 발급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필수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생활기록부	해당자 필수	·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성적증명서		· 국외고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학력인정증명서		· 북한학교 출신자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상 인정자 ※시·도 교육청에서 발급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라. 유의사항

- 1) 입학 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서류 발행기관의 "원본 대조필"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 2)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공증기관이 공증한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3) 제출서류상 이름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4) 제출서류 중 공인기관의 공증서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영사)관의 공증을 권장함
- 5) 지원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한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6) 원본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회신용 봉투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이때 회신용 봉투의 겉봉에 지원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등기우표를 부착하여야 함
- 7) 제출서류의 지연도착,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의 불명, 연락처 오기재, 모집요강에서의 요구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책임임

6. 전형료: 70,000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외의 전형은 별도 모집요강 참조)

## 7. 지원자 유의사항

### 가. 일반사항

- 1) 지원자(수험생)는 수험기간 중 우리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반 지시에 따라야 함
- 2) 서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 및 접수 취소가 불가능하고,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니 신중을 기하기 바람
- 3) 전형기간 중 연락이 가능하도록 전화번호, 주소 등 연락처를 입학원서 접수 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휴대폰 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안 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변경 시 입학관리팀(043-229-8033, 8034)으로 즉시 통보

- 4) 입학전형 성적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 5)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 또는 초과한 경우에도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6)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선발 사정원칙 및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 7) 신입생은 입학년도 1학기 중에는 휴학할 수 없음[질병 휴학 및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학(입영통지서가 있는 경우) 제외]
- 8) 에너지융합공학과(편제정원 45명) 1학년은 청주대학교 본교에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2학년 교육과정 부터는 새롭게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음성) 청주대학교 산업단지캠퍼스에서 에너지 특성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함
- 9) 바이오의약학과 1학년은 본교에서 교양수업 중심으로, 2학년부터는 오송바이오캠퍼스(KTX오송역, 식약처 등 정부기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공공기관 및 다양한 제약 바이오기업과 인접)에서 첨단 바이오 전공수업을 수강하게 되며, 학기 중 본교와 오송 바이오캠퍼스 간 하루 왕복 3회 셔틀버스를 운행함

### 나. 복수지원 허용 범위

- 1)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은 최대 6회 이내에서 복수지원 가능
- 2) 지원자가 6개 전형(정원 외 전형을 포함한 수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 됨
- 3) 동일한 전형에 2개 이상의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없음
- 4)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 포함)는 우리 대학교는 물론 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다. 이중등록 금지 원칙

- 1)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온라인 문서등록 완료 상태)해야 함
- 2)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함

- 3)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4)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5)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라. 복수지원, 이중등록자 및 등록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1)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 2) 대학복수지원 금지 위반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는 입학을 취소함
- 마. 미등록자에 대한 조치
- 1) 합격자는 온라인 문서등록 완료 후 반드시 최종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음
  - 2) 온라인 문서등록 및 최종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됨
- \*수시 합격자는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바. 대입 지원 부정에 관한 사항
- 1)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학취소를 할 수 있으며,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의 등록금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반환
- 2) 우리 대학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는 입학취소 후 3년간 우리 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 3) 우리 대학교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8. 문의 및 상담

가. 전화 (043)229-8033, 8034

나. FAX: (043)229-8037

다. 주소: 우편번호 28503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입학처  
입학관리팀

라. 홈페이지

1) 청주대학교: <http://www.cju.ac.kr>

2) 청주대학교 입학처: <https://www.cju.ac.kr/ipsi/index.do>

# 2025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심사 신청원

## 1. 지원자격

영주교포			자영업	
해외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현지회사 근무
	상사직원			해외 선교활동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해외 파견 교직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란 우측 빈 칸에 ○표 하십시오.		

## 2. 지원자 인적사항

지원 모집단위	대학			학부(과)	
성 명		국 적		성 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여권번호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국 내 연락처	주 소				
	전 화	집 전 화 : 휴대전화 :	e-Mail		

## 3.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관 계		직 업	
직장명			전 화	집 전 화 : 휴대전화 :	
주 소			e-Mail		

## 4. 교포 및 외국인 학생 기재란(해당자)

교포 학생	영주 국가		최초출국일	20	년	월	일
	영주권번호		최종귀국일	20	년	월	일
외국인 학생	국 적		시민권번호				
			시민권취득일	20	년	월	일

5. 교포 및 외국인 보호자 기재란(해당자)

교포	부	영주국가		최초출국일	20	년	월	일
		영주권번호		최종귀국일	20	년	월	일
	모	영주국가		최초출국일	20	년	월	일
		영주권번호		최종귀국일	20	년	월	일
외국인	부	국 적		시민권번호				
				시민권취득일	20	년	월	일
	모	국 적		시민권번호				
				시민권취득일	20	년	월	일

6. 학력 기재란(초·중·고·대학)

학교명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기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①	. . . ~ . . .	년 개월		
②	. . . ~ . . .	년 개월		
③	. . . ~ . . .	년 개월		
④	. . . ~ . . .	년 개월		
⑤	. . . ~ . . .	년 개월		
⑥	. . . ~ . . .	년 개월		
⑦	. . . ~ . . .	년 개월		
⑧	. . . ~ . . .	년 개월		
⑨	. . . ~ . . .	년 개월		
⑩	. . . ~ . . .	년 개월		

학교명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초·중·고교 총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 고등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학교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 중·고교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 고교 재학기간	년	개월

7. 보호자 출입국 기재란

구분	외 국 체 류 기 간		학교소재지	
	기 간	체류년수	국가명	도시명
부	가 . . . ~ . . .	년 개월		
	나 . . . ~ . . .	년 개월		
	다 . . . ~ . . .	년 개월		
	라 . . . ~ . . .	년 개월		
	마 . . . ~ . . .	년 개월		
모	바 . . . ~ . . .	년 개월		
	사 . . . ~ . . .	년 개월		
	아 . . . ~ . . .	년 개월		
	자 . . . ~ . . .	년 개월		
	차 . . . ~ . . .	년 개월		

부모 체류기간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																											
	학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	가																											
	나																											
	다																											
	라																											
	마																											
모	바																											
	사																											
	아																											
	자																											
	차																											

신청자(지원자와 관계 : ) (인)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귀교의 2025학년도 신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심사를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청주대학교 총장 귀하

2024학년도

수험번호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신입학 특별전형 지원서

Application for Undergraduate Admission

## 인적사항(Personal Data)

이름: \_\_\_\_\_  
(Name) 한글(Korean) 영문(English) 성별(Gender)국적: \_\_\_\_\_  
(Nationality) 출생국: \_\_\_\_\_ (Country of birth) 체재국: \_\_\_\_\_ (Country of stay)생년월일: \_\_\_\_\_  
(Birth date) 주민등록번호: \_\_\_\_\_ (Resident Registration No.)주소: \_\_\_\_\_  
(Mailing address):우편번호를 포함할 것(Postal code included)사진  
Attach photo  
(3cm×4cm)전자우편주소: \_\_\_\_\_  
(E-mail address)전화번호: \_\_\_\_\_ 이동전화번호: \_\_\_\_\_  
(Phone No.) (Mobile phone No.)보호자: \_\_\_\_\_  
(Sponsor) 이름(Name) 관계(Relation) 직업(Occupation) 전화번호(Phone No.)비상연락망: \_\_\_\_\_ 이동전화번호: \_\_\_\_\_  
(Emergency notification) 주소(Address) (Mobile phone No.)전화번호(Phone No.) \_\_\_\_\_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1학기 시작 첫날: \_\_\_\_\_ 년(year) 월(month) 일(day)  
(1st day of high school 3rd grade)

	여조교표		기여어	
지원 자격	해외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현지회사 근무
		상사직원		해외 선교활동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해외 파견 교직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란 우측 빈 칸에 ○표 하십시오.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I confirm that all the information in my application is complete and correct.)

년월일(Date)

성명(Name)

서명(Signature)

위 본인은 귀 대학교 \_\_\_\_\_ 대학 \_\_\_\_\_ 학과에 입학 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실기과제: \_\_\_\_\_ (실기고사 대상자만 해당)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청주대학교 총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동의서

청주대학교는 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시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고 있으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 성명(한글) : \_\_\_\_\_
2. 지원자 생년월일(년/월/일) : \_\_\_\_\_
3.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위탁 전형: 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4. 지원자격 관련 제출 서류

지원사항	제출 서류	해당사항에 V
재외국민(2%)전형	지원자격심사신청서, 입학원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지원자), 여권사본(부·모·지원자),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부·모·지원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모·지원자), 부모 재직 관련 서류, 학적 관련 서류 등 관련 제출 서류 일체	
전교육과정 이수자전형	지원자격심사신청서, 입학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학적 관련 서류 등 관련 제출 서류 일체	
북한이탈주민전형	지원자격심사신청서, 입학원서, 학적 관련 서류 등 관련 제출 서류 일체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지원자가 제출한 위의 지원자격 관련 제출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 항목 전체	입학전형업무 수행 (원서접수, 지원자격 심사 등)	10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 . .

지원자 \_\_\_\_\_ (서명)  
부 \_\_\_\_\_ (서명)  
모 \_\_\_\_\_ (서명)

청주대학교 총장 귀하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	--------------------------	---------------------------	-----------------------------	---------------------

<b>발급대상자</b>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b>증명종류</b> Type of Certificate	<input type="checkbox"/>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열람 (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time(s)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input type="checkbox"/> 포함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input type="checkbox"/>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input type="checkbox"/>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input type="checkbox"/>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input type="checkbox"/>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	--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부터(from) . . . . . 까지(to)
---

용도 (Purpose)

<b>신청인</b>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 Si·Gun·Gu or Eup·Myeon·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 1)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2)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 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다.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 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